

# 「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21년 11월 16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 : 2021년 11월 25일 회부
- 상정일자 : 제272회 평창군의회(정례회)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 
(2021년 12월 16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행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반장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경비 및 편의 지원항목을 정비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편의제공(안 제12조)
  - 반장을 대상으로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지원 규정 신설
  - 그 밖의 경비 및 편의 지원항목 정비 및 명문화기구 조정 현황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이현진)

○ 본 조례안은 「평창군 반 설치 조례」 일부를 개정하여 반장에게 경비 및 편의 제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지원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

○ 지원 내용은 아래 4가지 사항입니다.

1. 상해보험 가입

2. 향토지 구독 지원

3. 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

4. 문화체육행사, 직무교육,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

○ 통신요금 부분은 반장의 원활한 임무수행과 사기진작을 위해

연 통신요금 5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

738명에 연간 36,900,000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검토결과,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반장의

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**

**5. 토론요지 : 없음**

**6. 심사결과 : 수정의결**

조례안 제12조제2항제3호 “연 5만원 이하의 통신요금”을

“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”으로 수정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**

**【붙임】**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## 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군수는 반장의 임무수행 능력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 및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.

1. 상해보험 가입
2. 향토지 구독 지원
3.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
4. 문화·체육행사, 직무교육, 표창수여 등 그 밖에 임무수행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